**교수아파트 관리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이 관리하고 있는 교수아파트(이하 아파트라 칭함)이 입·퇴주절차 및 제반 관리에 대한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명랑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입주자격)**

     울산대학교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대우교원 포함)에 한한다.

단, 교원(대우교원 포함) 이외의 입주는 병원장이 정한다.

**제 3 조 (입·퇴주 절차)**

1. 입주 희망자는 총무팀으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 병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호실을 배정받아 총무팀에서 해당된 호실의 열쇠와 비품을 인수 받는다.

2. 퇴주자는 총무팀에 통보하여 입주 시 지급받은 열쇠와 비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4 조 (입주자 공제료)**

     입주민들은 전기료, 가스료, 난방료, 수도료 등 일체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매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 5 조 (경비의 한계)**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병원에서 경비용역을 입주자 부담

     으로 제공하되 도난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서 지지 않으며

     차량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리한다.

**제 6 조 (시설물 개조 및 훼손금지)**

1. 입주자는 병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개조할 수 없다.

2. 입주자는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3. 입주자가 시설을 임의로 개조 또는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는 병원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경비를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주자 준수사항)**

     입주자는 아래의 사항을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1. 배정 받은 호실과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에서 사용 보존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손,망실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아파트의 제반 규율과 배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타 입주자에게 두드러진 피해를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3. 호실 변경 시는 필히 총무팀장과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4. 기타 공동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제 8 조 (보수책임의 한계)**

     입주자와 병원의 보수책임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병원 부담분

(1) 건물외부의 파손

(2) 지붕 및 물받침대 파손

(3) 급수 및 배수로 시설의 보수

(4) 복도 출입문 및 창문의 노후화로 제작 또는 보수

(5) 건물의 누수로 인한 보수

(6) 바닥 아스타일의 보수

(7) 화장실 욕조 및 타일의 자연적 파손

(8) 각 호실 및 공동구역내 전기기구류의 보수(스위치, 콘센트 등)

(9) 복도 창문 및 출입문의 부주의로 인한 유리 파손

(10) 욕조 및 화장실에 부착된 위생자재 일체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11) 전기, GAS 미터기의 파손

(12) 각 세대 도배 및 장판은 신규 부임시 1회에 한한다.

(13)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

2. 입주자 부담분

(1) 각 세대  창문 유리, 방충망의 파손

(2) 창문 및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 장치의 파손 및 설치(보조잠금장치)

(3) 조명등의 교체 (형광구, 백열구)

(4) 욕조 및 타일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샤워기, 거울, 세면대, 수건걸이,기타)

(5) 지급 비품의 파손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개정)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3. (개정)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4. (개정)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